

#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22
----------	-----

2012년 7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결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2년 6월 12일 회부
- 다. 상정결과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 6월 25일 상정·보류)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 6월 27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국장 강종필)

### 가. 제출이유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포함하여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임금과 체불임대료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중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
  -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기타공사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등

-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등에게 유·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 지급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하도급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원도급자 등이 임금 적기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제한 또는 낙찰자 결정 시 감점부여가 가능하도록 명시함(안 제9조).

###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 용 훈)

#### 가.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한 검토

- 본 제정안은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포함하여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임금(체불임대료 포함)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 이를 위하여 체불임금이 없도록 적용대상의 범위(안 제3조), 시장과 사업주의 책무(안 제4조, 안 제5조), 근로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내용 확인(안 제6조), 대가지급 예고(안 제7조) 및 직접지급(안 제8조), 계약의 제한(안 제9조), 신고센터의 설치(안 제10조), 자료제출 요구(안 제11조), 계약 특수조건 반영(안 제12조)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과 관련된 준수사항, 조치사항 등이 관련 법령에 종합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임금체불과 관련된 내용만을 별도로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시 조례는 없으며, 현재 대부분의 시·도에서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2011. 10. 27 제정)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주로 건설공사에서의 하도급 부조리 근절 관련 내용으로, 본 조례안과 함께 운영되어 진다면 불공정하도급 및 체불임금 방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계약담당관(재무국)과 민간부분의 체불임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감사관실)이 이원화 되어 있으므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시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등의 입법절차에 따라 유관부서와의 협의 및 반영 등을 거쳐 조례안이 입안되었음.

## 나. 세부내용 검토

### 1) 적용대상 범위(안 제3조)

○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관급공사의 대상범위를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1억원 초과 전문공사, 8천만원 초과 기타공사, 5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및 체불임금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관급공사는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포함하여 시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말함(안 제2조제6호).

※ 종합공사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  
전문공사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

○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제5호)에 따라 경쟁에 의한 계약대상을 범위로 정한 것(수의계약 포함 안됨)이며, 다른 시·도 조례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 타 시·도 입법사례

- 전라북도 : 1억원이상 공사, 5천만원 이상의 용역
- 경상남도 :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 3억원) 이상의 공사, 2억원(일반 용역은 1억원) 이상의 용역(학술용역 제외)

- 전라남도 : 1억원 이상의 공사, 5천만원 이상의 용역
- 인천광역시 : 총공사비 5억원 이상 건설공사
- 대전광역시 :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1억원초과 전문공사, 8천만원 초과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 5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 최근 3년간 적용범위 대상 공사 발주현황(본청·본부·사업소) 〉

(건수:건, 금액:백만원)

연도	계		2억원 초과 종합공사		1억원 초과 전문공사		8천만원 초과 기타공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476	1,719,282	190	1,101,052	1,108	549,922	178	68,308
2010	662	1,233,978	99	973,179	481	214,761	82	46,038
2011	522	348,425	68	109,894	393	222,551	61	15,980
2012.5.31	292	136,879	23	17,979	234	112,610	35	6,290

- 다만 제5호에 대상 이외의 공사 또는 용역 중 체불임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적용을 받는다고 했으나, 그 적용 사업의 범위가 모호하여 계약담당자가 적용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 해석할 우려가 있는바, 주체(서울특별시시장 등)를 명확히 명기하는 등 관련규정의 보완과 함께 본 조례안 시행 후 적용대상 등의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안 제4조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예방조치를 취하며(안 제1항), 지도·점검 결과 1회 이상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도·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안 제2항)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체불임금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공개대상과, 방법,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고 보여짐.

### 3) 사업주의 책무(안 제5조)

- 안 제5조는 사업주<sup>1)</sup>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안 제1항), 근로계약 및 자재·장비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며(안 제2항), 대가청구시 근로자가 사역한 경우는 근로계약서와 근로자 명부를, 자재·장비를 임차한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인 명부를 제출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3항),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임금 등(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의 채권이 변제되도록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4항).
- 안 제2항에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명시하면서, 자재·장비 임대차 계약의 경우 서면 계약체결 관련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근로계약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17조로, 자재·장비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르도록 명시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으로 보임.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에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자재·장비를 임차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안 제2조제8호)

- 또한 안 제3호에서 발주자에게 관련 서류(근로계약서와 근로자 명부, 자재·장비의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인 명부)를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운용될 소지가 있고, 안 제7조(대가지급 예고) 및 제8조(대가의 직접 지급)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라 판단되는바, '열람 또는 제출'이 아닌 '제출'만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의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문 중 근로자의 '사역'이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도 아닐뿐 아니라 현재 많이 사용되는 용어도 아니므로 '고용'으로 대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할 것임.

#### 4) 근로자 사역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 확인 및 통지(안 제6조)

- 안 제6조는 공사감독자<sup>2)</sup>가 계약상대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거나 열람하여 점검·확인한 후 기성 및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1항), 계약담당자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안 제2항)한 것으로,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확인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안 제6조의 조 제목 및 조문 내용 중 '사역'이라는 용어도 안 제5조와 함께 수정·보완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

2) 공사감독자: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2호의 감리원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안 제2조제9호)

## 5) 대가지급 예고(안 제7조)

- 안 제7조는 발주자가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사항을 예고(안 제1항)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본인 및 자재·장비 임대인에게 대가지급 예고사항을 통보하도록(안 제2항) 규정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공사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언제 받았는지를 근로자나 자재·장비 임대인이 알게 함으로써 대가지급과 관련한 대응력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체불임금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6) 대가의 직접 지급(안 제8조)

- 안 제8조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직접 체불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상위법령에 임금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임금채권 등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 는 전제를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와 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으므로 규제법정 주의에 위배되지 않음(제96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검토의견 참조).

## 7) 계약의 제한(안 제9조)

- 안 제9조는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금 적기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서울시와 계약체결시 수의계약을 제한하거나 낙찰자 결정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5항 및 제42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수의계약대상자와 낙찰자 결정시 계약이행능력, 과거 계약이행의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sup>3)</sup>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체불임금 방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판단됨.

※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행안부 예규)’에 ‘임금체불’과 ‘최저 임금 위반’에 대한 항목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추후 개정 건의를 통해 명확화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짐.

## 8) 신고센터 설치(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체불임금과 관련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안 제1항),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2항).
- 현재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2011. 10. 27 제정·시행)에 의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민원사항 처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별도의 신고센터를 설치하기 보다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센터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3)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4. 천체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나. 세부평가 방법 1)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절. 그 밖의 사항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며,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개요

- 설치일시 : 2011. 3. 7.(월)
- 설치위치 : 다산플라자 1층
- 근무인원 : 1일 2명 상시근무
- 운영방법 : 신고센터 민원 처리기준에 의거 처리

※ 기관별 신고센터 설치 (34개소)

- 서울시 (4) : 하도급개선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안전본부, 상수도사업본부
- 자치구 (25) : 전 자치구 감사담당관 내 설치
- 공사·공단 (5)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울시설  
관리공단, SH공사

9) 자료제출 요구 및 계약특수조건 반영(안 제11조 및 제12조)

- 안 제11조는 시장이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고(안 제1항), 사업주는 성실히 제출하도록 하며(안 제2항), 안 제12조는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사항을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사업주들의 협조 및 본 조례 시행을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안 제4조에서 사업장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을 추가하여 사업기간 동안 2회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답변) 사업기간이 짧을 경우에 의미가 있겠지만, 장기간의 경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질의) 안 제11조 자료요구의 경우 구체적이지 못하는데 어떠한 자료를 요구할 것인지?

(답변) 안 제5조의 사업주의 책무에서 계약서, 명부 등을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 사역이라는 용어는 일제시대 용어이므로 수정이 필요함.

(답변) 예.

(질의) 재하도급의 경우까지 감안하고 만든 것인지?

(답변) 재하도급은 일단 법에 저촉되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질의) 감사관실에 하도급 관련 조례가 있는데, 본 조례안 입안당시 논의가 있었는지?

(답변) 감사관실과 협의했음.

(질의) 안 제4조에서 지도·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로 했는데 “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답변) 선언적인 의미로 입법기술적 표현이라 할 것임.

(질의) 안 제5조에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였는데 자의적 운영이 될 수 있으므로 열람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제출하라고 강행하는 규정에 대한 의견은?

(답변) 입안당시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입법예고 결과 과도한 서류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음.

**5. 토론 요지 : 없 음.**

##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조례의 적용 대상 및 상위법령 준용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조문의 용어를 보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체불임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하는 주체를 서울 특별시장으로 명확히 하고, 지도점검 결과 공개를 강행규정으로 함(안 제3조제5호, 안 제4조).
- 상위법령의 준용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을, 자재·장비업체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대가청구 시 발주자에게 계약서 및 명부뿐만 아니라 통장사본도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함(안 제5조).
- 현대 어법에 맞지 않는 “사역” 용어를 “고용”으로 함(안 제6조).

**7.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22
----------	-----------

제안년월일 : 2012년 7월 9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수정이유

- 조례의 적용 대상 및 상위법령 준용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조문의 용어를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체불임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하는 주체를 서울 특별시장으로 명확히 하고, 지도점검 결과 공개를 강행규정으로 함(안 제3조제5호, 안 제4조).
- 상위법령의 준용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을, 자재·장비업체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대가청구 시 발주자에게 계약서 및 명부뿐만 아니라 통장사본도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함(안 제5조).
- 현대 어법에 맞지 않는 “사역” 용어를 “고용”으로 함(안 제6조).

#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5호 중 “체불임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안 제4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을 “시장은”으로 하며, 제2항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5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을, 자재·장비업체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가청구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통장사본
2. 자재·장비를 임차한 경우 : 자재·장비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명부, 통장사본

안 제6조의 조명 및 제1항 중 “사역”을 “고용”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적용대상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관급공사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4. (생략)</li> <li>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 이외의 공사 또는 용역 중 <u>체불임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사업</u></li> </ol>	<p>제3조(적용대상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관급공사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4.</li> <li>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 이외의 공사 또는 용역 중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u></li> </ol>
<p>제4조(시장의 책무) ①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체불임금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1회 이상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인 등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도·점검 결과를 <u>공개할 수 있다.</u></p>	<p>제4조(시장의 책무) ① <u>시장</u>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체불임금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1회 이상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인 등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도·점검 결과를 <u>공개하여야 한다.</u></p>

제5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자재·장비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가청구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사역한 경우 : 근로계약서와 근로자 명부
2. 자재·장비를 임차한 경우 : 자재·장비의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인 명부

④ 사업주는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 사역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 확인 등) ① 공사감독자는 체불임금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 시 계약상대자(하도급 대금

제5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을, 자재·장비업체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가청구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통장사본
2. 자재·장비를 임차한 경우 : 자재·장비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명부, 통장사본

④ 사업주는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 확인 등) ① 공사감독자는 체불임금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 시 계약상대자(하도급 대금

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거나 열람하여 이를 점검·확인한 후, 해당 관급공사 기성 및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거나 열람하여 이를 점검·확인한 후, 해당 관급공사 기성 및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각종 자재·장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건설기계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건설기계근로자”란 각종 자재·장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자재·장비의 임대료를 포함한다)·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4. “임대료”란 공사와 용역에 이용되는 각종 자재와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
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등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관련된 임금등을 말한다.
6. “관급공사”란 시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말한다. 이 경우,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포함한다.
7. “발주자”란 공사 또는 용역을 사업주에게 도급하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8.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자재·장비를 임차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2호의 감리원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10.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1.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관급공사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2.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3.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기타공사
4.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 이외의 공사 또는 용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체불임금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1회 이상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인 등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을, 자재·장비업체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가청구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통장사본

2. 자재·장비를 임차한 경우 : 자재·장비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명부, 통장사본

④ 사업주는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 확인 등)** ① 공사감독자는 체불임금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 시 계약상대자(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거나 열람하여 이를 점검·확인한 후, 해당 관급공사 기성 및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지급 예고)** ① 발주자는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유·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대가지급 사항을 예고받은 계약상대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상자에게 유·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예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경우 : 근로자 본인
2.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우 : 자재·장비의 임대인

**제8조(대가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급공사의 대가에서 공제한 체불임금을 하도급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항
3.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임금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가 관급공사의 대가에서 공제한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항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하도급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그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9조(계약의 제한 등)** 발주자는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금 적기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제한하거나 낙찰자 결정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체불임금과 관련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시장은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업주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관급공사의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